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1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김종양・김성원・고동진

이달희 • 박정하 • 신성범

한기호 • 주진우 • 조지연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특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 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 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u>2024년 12월</u>	<u>2029년 12월</u>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u>31일</u>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가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이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 략)

3. (생략)

② ~ ⑤ (생 략)

2)
<u>2029년 12월 31일</u>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